

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17. 10. 17.>

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·표지부착방법(제17조 관련)

1. 포장방법

- 가. 수출입대상 폐기물은 품목별로 분리하여 각각 포장하여야 한다.
- 나. 내용물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하며, 액체상태의 폐기물은 누출위험이 없는 밀폐용기를 사용하여 포장하여야 한다.
- 다. 외부포장재는 충격 등에 잘 찢어지거나 포장형태가 변하지 않도록 튼튼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하며, 수출입폐기물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포장하여야 한다.

2. 표지부착방법

- 가. 수출입폐기물표지는 외부포장재에 부착하되 포장된 수량 전부에 대하여 부착하여야 한다.
- 나. 수출입폐기물표지는 다음과 같이 하되 크기는 20cm, 세로 30cm로 하며, 국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.

수출입폐기물표지 Export-Import Mark of the Waste		
○폐기물명 : Name of the Waste :	30cm	
○UN분류번호 : UN Classification No. :		
○허가번호 : Authorization No. :		
○수출국 : Country of Export :		
○수입국 : Country of Import :		
○경유국 : Expected Country of Transit		
○수출자 : Exporter of the Waste : • 주소 : Address : • 전화번호 : Tel :		
○수입자(수하인) : Consignee of the Waste : • 주소 : Adress : • 전화번호 : Tel :		
○선적일자 : Shipping Date		
20cm		

※ 바탕색 : 황색, 글씨 : 흑색